

국가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병역기피 현상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는 2002년도 연구용역 사업중 하나인 “한국내 양심적 집총거부에 관한 실증적 연구”와 같은 조사·토론·연구의 차원을 넘어서서 병역거부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는 데 문제점이 있어 신중하지 못한 사업선정이라고 생각됨.

향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시민단체에 대한 인권관련 지원사업의 선정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최소화되고 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분명한 선정기준을 정함과 아울러 사업추진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등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업선정이 될 수 있도록 선정위원의 자격, 지원사업의 구체적 범위설정 등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인권시민단체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단 제 명	보조금
1	사병의 인권 및 처우개선을 위한 기초사업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12,650
2	해외투자 한국기업 인권현황 백서발간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7,950
3	군인의 전화	군역문사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8,400
4	여성인권을 찾는 시민감시단 사업	(사)한국성폭력상담소	4,500
5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 한국시민사회 입장제출 및 보고대회	진보네트워크센터	11,620
6	이주노동자를 위한 인권수첩 및 CD발간 보급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13,650
7	'빅브로더 보고서'발간 사업	함께하는시민행동	8,325
8	환자권리중진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건강연대	8,575
9	국제형사재판소와 동북아시아 인권단체역할 제고를 위한 국제 워크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9,600
10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용 다류제작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 대체복무제개선을위한연대회의	13,000
11	교칙을 바꾸자. 청소년 인권을 찾자	(사)홍사단	5,530
12	여성 장애인 성매매 유입 근절을 위한 연대체 구성과 실천프로그램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10,100
13	중고교 평화 인권반 운영 및 교안개발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9,270
14	지역사회 청소년 인권을 위한 심포지엄 및 인권교실	익산YMCA	4,610
15	기지촌 다큐멘터리 '나와 부엉이' 영/일어 번역 및 자막 편집 사업	두 레 방	11,613
16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의 보호 및 촉진에 관한 포괄적인 국제조약 홍보 및 교육사업	한국DPI	9,066
17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실무자의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강화 및 인권활동가 양성	(사)부스리기사랑나눔회	6,370
18	제1회 노근리인권 백일장 및 독후감 대회	노근리사건대책위	6,797
19	2003시민을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 '울산인권학교'	울산인권운동연대	8,780
20	아시아정의평화연대 활동가 국제회의(JP*W) 참석	천주교인권위원회	3,000
21	한국시민사회단체의 국제연대 역량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활동가 국제연대 교육연수	환경운동연합	10,000
22	여성의 빈곤화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여성 공동행동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및 네트워크 강화	(사)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9,030
23	희귀난치질환자의 기본생활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제도 교육사업	한국백혈병 환우회	7,744
합 계			200,000

### 마.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의 조사·구제업무에 관한 사항

#### (1) 인권침해조사·구제 등 핵심업무에의 집중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목적은 인권보호 및 향상이고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는 구체적 업무분야는 크게 인권침해조사·구제, 차별행위 등의 조사·구제, 인권관련 정책과 관행 등에 대한 개선 권고(또는 의견표명) 그리고 인권에 대한 교육홍보 등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취지 그리고 아직도 엄존하는 인권침해와 차별의 현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구제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그 중에서도 진정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침해당사자에게는 참기 어렵고 억울한 문제로서의 개연성이 내재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구제야말로 절실한 현안과제일 것임.

2003년 기준 진정사건을 살펴 보더라도 접수된 총 3,815건 중 인권침해 사건이 전체의 79.7%(3,041건)로서 차별행위 사건 9.4%(358건), 기타 사건 10.9%(416건)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할 만큼 인권침해문제는 아직도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음.

제도적 한계 등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급히 추진할 일은 조사역량의 강화, 집행의 실효성 확보 등을 통해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예방할 것인가 하는 점임.

한정된 예산과 인력하에서 광범위한 많은 일을 모두 잘 할 수는 없다고 볼 때, 인권침해문제 등 중요한 현안과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시성 내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많은 사업(예컨대 교육홍보 관련사업중 일부)을 할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조사·구제를 비롯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2) 업무평가시스템의 부재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평가시스템이 전무한 실정임. 각종 사업을 엄정 평가하여 피드백하고 업무의 우선순위 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볼 때, 업무평가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겠음.

정부 각 부처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매년 업무평가를 시행하는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관으로서 여기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직진단 또는 평가시스템을 마련·시행하여 평가 또는 진단의 결과 각종 사업의 실효성문제, 부서별 인력배치 및 사업별 예산편성의 비중문제 등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3)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 사건 처리상의 문제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진정사건은 총 7,408건으로 이 중 처리건수는 76.3%인 5,653건이고, 인용건수<sup>99)</sup>는 171건으로 인용률은 2.3%에 불과함. 또한, 인용까지 소요기간이 평균 8개월이상 걸리는 등 진정사건의 지연처리의 문제가 있는 바 그 원인은 조사권한의 한계, 조사인력 및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보여짐.

또 각하의 건은 77.7%로 이는 취하가 47%에 이르는 점 등에 기인하지만, 9.9%는 1년이 넘었다고 해서 각하한 경우임.

1년이상 경과를 이유로 각하하는 것은 진정의 성격상 억울한 사정의 개연성이 내제되어 있다고 볼 때, 이를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4호<sup>100)</sup>를 개정하거나 단서규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직권조사의 건이 설립이후 지금까지 4건에 불과한 것은 진정이 제기되는 경우에만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일처리 방식에 기인하는 바, 인권취약분야에 능동적으로 직권조사에 나서는 등 인권침해를 사전예방하고 실효성있게 해결해 나갈 필요도 있음.

99) 고발·수사의뢰, 정계권고, 긴급구제, 권고, 합의권고, 합의종결의 합계  
100) 4.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된 경우.

다만,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건 처리 현황  
(2001. 11. 26 ~ 2003. 12. 31)

□ 진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건수	사건종결										조사진행	처리율(B)
		소계	고발, 수사의뢰	정계권고	긴급구제	권고	합의권고	합의종결	기타	이송	각하		
계	7,408	5,653	12	19	4	103	5	28	945	143	4,394	1,755	76.3
%	-	100.0	0.2	0.3	0.1	1.8	0.1	0.5	16.7	2.5	77.7	-	-
인권침해	5,874	4,502	12	19	4	60	5	23	853	142	3,384	1,372	76.6
차별행위	547	398	-	-	-	38	-	5	66	1	288	149	72.7
기타	987	753	-	-	-	5	-	-	26	-	722	234	76.3

□ 진정사건 각하 사유별 내역

(단위 : 건)

사건구분	계	각하사유						기타
		조사대상 아님	명백히 거짓, 이유없음	조사 원치 않음, 진정권한	1년이상 경과후 진정	구체적사항 진행·종결	법원 판결, 현재 결정에 반함	
계	4,394	828	197	2,067	436	665	181	20
%	100.0	18.8	4.5	47.0	9.9	15.1	4.1	0.5
인권침해	3,384	284	167	1,882	345	535	159	12
차별행위	288	64	2	104	52	59	7	-
기타	722	480	28	81	39	71	15	8

□ 직권조사 사건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조사결정	조사진행	조사종결	비고
계	4	1	3	
인권침해	2	-	2	2건에 대하여 고발 및 제도개선 권고조치
차별행위	2	1	1	1건에 대하여 제도개선 권고조치

※ 참고자료

1. 2002년도 결산 시정요구 및 조치내용

세 목	관련내용요지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국제회의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 예산상 당초 계획되었던 상당 부분의 국제회의를 인권위사무처 출범전의 국제회의 또는 참가지위 의 결여 등의 사유로 참 가하지 못하고 그 대신 여러 NGO 회의 등에 참 가하였음.	- 인권위가 독립된 참가 지위를 갖는지 여부, 국제회의 참가에 따르는 실익 등을 면밀히 검 토하여 국제회의의 예산 을 편성함으로써, 향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당초 계획대로 참 가함으로써 문제 점 해소됨.
간단한 법률 검토에 대한 용역화 문제	- 인권위 조직내에 법제개 선담당관실, 인권연구담 당관실 등 자체 법률검 토조직이 존재하고, 전문 계약직 등을 통하여 변 호사 자격을 갖춘 실무 인력(5인)을 갖추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일부 간 단한 법률검토 사안을 외부 용역화 하였음.	- 외부용역을 발주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아니하는 간단 한 법률검토의 경우 에는 인권위 자체조 직과 인력을 활용하 는 방안을 강구할 것.	- 2003년 이후 법령 검토를 위한 용역 발주를 하지 않음.

2. 2003년도 국외출장 현황

□ 기본사업비 : 53,226천원

○ 외국국가인권기구 및 국제인권기관 방문 현황 : 2회 6명

주관	출장기관(회의)	출장목적	기간/지역	참가자	비고
국가인 권기구	유럽인권재판소 및 스웨덴 옴부즈만	활동상황 파악 및 교류협력 체제 구축	106-11 프랑스 스웨덴	인권정책국장, 차별 조사국장, 최영란	
	유럽인권기구방문	활동상황 파악 및 교류협력 체제 구축	12.11-21 안타르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유현,유시춘,김만홍 위원, 최영란	주요사업 비와 함께 집행
	몽골인권위원회	활동상황 파악 및 교류협력 체제 구축(위원장 초청)	8.25-29 몽골	위원장 유시춘위원심상돈	
	사회권위원회	북한보고서 심의과정 모니터링	11.17-22 제네바	박경서위원 교육협력국장	주요사업 비와 함께 집행

□ 주요사업비 : 214,362천원

○ 국제회의의 참석 현황 : 21회 55명

주관	출장기관(회의)	출장목적	기간/지역	참가자	비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정부보고서 심의 모니터링	1.11-18 제네바	박경서위원 장영아 정연길	
	인종차별 교육교제 개발 워크숍	인권위 인권교육 참고	2.18-21, 파리	김철홍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1차 워크숍	아·태지역 정부간회의로서 정부대표, NIs, NGOs 참가	2.22-3.1, 이슬라미버드	교육협력국장 김선민	
	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 활동 모니터링	3.15-4.19(5주), 제네바	차별조사국장 등 7인	
	장애인협약특별 위원회(2차)	장애인협약 성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참가 및 의견개진	6.20-6.23, 뉴욕	유현위원, 최영란 김정학	

주관	출장기관(회의)	출장목적	기간/지역	참가자	비고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63차) 및 인권 소위원회	인종차별협약 한국정부 이행보고서 심의 및 인권소위원회 활동 모니터링	8.7-14 제네바	박경서위원 김오성위원 정연걸	
	사회권위원회	북한보고서 심의과정 모니터링	11.17-22 제네바	박경서위원 교육협력국장	
APF	APF 워크숍	장애인권리 및 장애인협약관련 워크숍	5.24-6.1, 뉴델리	한희원국장	
	인권과사법행정 워크숍	인권과 사법행정 국제회의 참가	9.8-12 말레이시아	차정환 서수정	
NGO	ESCR-Net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위한 국제연대회의 참가	6.6-6.13, 치앙마이	유인덕, 이용근	
	비엔나+10아 태회의	비엔나 선언 10주년 평가 및 향후 과제 논의	12.13-17 태국	박경서위원	
	인권교육실무자 국제 회의	인권교육 실무자를 위한 국제회의 참가	11.9-14 태국	김철홍	
기타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제69차)	제69차 국제도서관협회연맹 (IFLA)대회 참가	8.2-9, 베를린	심민석	
	미국고용기회평등 위원회	조사관교육 참가	9.20-26 미국	이수연	
	북경주제 한국대사관-영사관	진정사건 현지 방문 조사	10.6-9 중국	정혜용 김원숙	
	실무연수	국외실무연수(행자부주관)	9.24-10.2 노르웨이, 네덜란드	김대철 등 11명	행자부 예산
	인권대사	인권위의 활동상황 홍보	9.14-20 영국,독일	박경서위원	
	실무연수	국외실무연수(행자부주관)	10.19-11.2 미국	박성남	행자부 예산
	심포지엄	일본 가쿠인대학교 초청심포지엄 참가	12.14-16 일본	정강자위원	
	국가인권기구	유럽인권기구방문	12.11-21 덴마크,노르웨이,이오스트라	유현,유시춘, 김민홍 위원, 최영란	

주관	출장기관(회의)	출장목적	기간/지역	참가자	비고
	국가인권기구	유럽아프리카 인권기구방문	12.20-28 스웨덴,노르웨이	위원장 등 5명	

\*실무연수를 제외한 NGO 및 기타 국외출장은 예산에 계상되지 않음.

○ 국가인권기구 교류 현황 : 6회 11명

교류기관	인원	소속	교류분야	일정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사무국	1	정책총괄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03.11.10~11.24
필리핀 인권위원회	2	총무과 인권교육	인사정책/인권교육	'03.11.10~11.24
피지 인권위원회	2	인권침해조사국, 인권교육	인권침해/인권교육	'03.11.19~12.3
뉴질랜드 인권위원회	2	차별조사국	차별조사 및 구제	'03.11.22~12.5
호주 인권위원회	2	법제개선담당관 인권침해조사국	법령·제도·정책 /인권침해조사	'03.11.29~12.13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	2	조사기획담당관 국내협력과	인권침해조사 /국제협력	'03.12.8~12.23

- 공탁금 국고귀속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 홈페이지를 접속할 때 안내광고창을 만드는 것은 어떤지는
- 호적민원도탈시스템 사업 보류가 호주제 폐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 호적을 가족부로 편제하면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변호사 비리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는지

### 6. 국가인권위원회소관

- 비정규직인 인권상담센터 상담원의 정규직화 필요성
- 국외출장 인원이 전체직원의 약 39%에 달하고, 한국을 대표한 단일팀의 참여가 바람직한 인권관련 국제회의에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따로 참여함으로써 국가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첩되는 것이 아닌가
- 양심적 병역거부관련 교육용 다류제작에 1,300만원을 지원한 것은 부적절하지 않은가
- 인권실태조사 용역과제중 유사한 과제가 많은 것 아닌가
- 탈북자 인권, 북한주민의 인권문제
- 이월과 불용이 과다한 것 아닌가

### 7. 부패방지위원회소관

- 신고자 보상의 부진사유
- 신고자보상사업과 관련하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이나 승진, 인사상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 필요
- 신고자보호가 매우 중요한데 현행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실질적인 신고자 보호가 미흡함. 이에 대한 대책은
-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설비보상 차원의 여비 등의 지급여부
- 용역사업에 대한 정밀한 사업계획이 필요
- 부패방지교육·홍보 관련 예산의 불용사유는
-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 교육 활성화 방안
- 부패방지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방안은
- 청렴도 측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 내부고발의 활성화 방안
- 부패방지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신고심사업무 활성화 방안은

둘째, 예비금의 사용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국회·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함.

### 5. 대법원소관

첫째, 고정자산매각대의 세입처리 문제에 대하여는 등기특별회계세 입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주의' 를 요구하고,

둘째, 일부 구 법원청사나 토지에 대한 관리부족, 토지매입예산의 일부법원에 대한 집중사용 및 법원청사와 등기소 신축사업에 있어서의 과도한 사고이월·불용에 대하여는 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각각 '시정' 을 요구하며,

셋째, 헌법재판소에 관련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비금제도는 관련기관과 함께 개선할 것을 요구함.

### 6. 국가인권위원회소관

첫째, 인권상담센터의 상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둘째,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대상 선정의 부적정 및 용역사업의 불필요한 사고이월 발생과 유사과제 선정문제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

### 7. 부패방지위원회소관

첫째, 신고자보상금 집행의 활성화 및 지방순회부패방지 활동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둘째, 연구용역의 발주시기 지연 및 불필요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함.

## VII. 심사결과

### 1. 법무부소관

원안대로 접수하기로 의결

### 2. 법제처소관

원안대로 접수하기로 의결

### 3. 감사원소관

원안대로 접수하기로 의결

### 4. 헌법재판소소관

원안대로 접수하기로 의결

### 5. 대법원소관

원안대로 접수하기로 의결

### 6. 국가인권위원회소관

원안대로 접수하기로 의결

### 7. 부패방지위원회소관

원안대로 접수하기로 의결

## VII. 시정요구사항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기로 의결함.

### 1. 법무부소관

분 류	구 체 적 사 실	시정요구수준	조치요구기관
예산의 부당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일반직의 직급조정과 관련한 인건비를 예산에 미반영</li> <li>· 일반회계</li> <li>· 검찰청운영 인건비 (1321-101, 102, 205)</li> <li>○ 법무부는 검찰청의 8·9급 정원을 줄이는 대신 6·7급의 정원을 192명 증원하면서 추가인건비를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여 광범위한 이·전용을 초래함.</li> </ul>	시 정	법 무 부
부당사항 (집행방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국민준법추진운동사업비를 사업 목적과 다르게 집행</li> <li>· 일반회계</li> <li>· 범국민준법추진운동(1100-214)</li> <li>○ 법무부는 범국민준법추진운동사업비의 상당부분을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관서운영비의 집행잔액을 용역비로 전용하여 전액 이월함.</li> </ul>	주 의	법 무 부
부당사항 (법적근거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전임의사를 경력직공무원(의무직공무원)으로 임명</li> <li>· 일반회계</li> <li>· 교도소운영 인건비, 교도소운영기본사업비 기준성기본사업비, 교정기관인력관리(1521-111, 1522-152·154)</li> <li>○ 의무직공무원 가운데 일부(22명)를 비전임의사로 충원하고 있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li> </ul>	제도개선	법 무 부



6.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분 류	구 체 적 사 실	시정요구수준	조치요구기관
기타 부당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상담센터 인력운영상의 문제</li> <li>· 일반회계</li> <li>· 기관운영(1101-214)</li> <li>○ 인권상담센터의 업무를 이직률이 잦은 비정규직인 명예직 자원활동가들이 담당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책임성, 조직의 안정성, 전문성 축적이 곤란한 문제가 있음.</li> </ul>	제도개선	국가인권위원회
기타 부당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단체 지원대상 선정의 문제</li> <li>· 일반회계</li> <li>· 교육협력(1151)</li> <li>○ 병역거부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원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하는 등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li> </ul>	시 정	국가인권위원회
예·결산 제도의 운용상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역사업의 사고이월 및 유사과제가 많은 문제</li> <li>· 일반회계</li> <li>· 인권정책(1111)등</li> <li>○ 면밀한 사전 계획 부족과 발주 지연 등으로 불필요한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li> <li>○ 인권상황실태조사 용역과제중 유사과제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용역과제의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li> </ul>	시 정	국가인권위원회

7. 부패방지위원회 소관

분 류	구 체 적 사 실	시정요구수준	조치요구기관
기타 부당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자보상제도운영의 문제</li> <li>· 일반회계</li> <li>· 기관운영(1101)</li> <li>○ 2001년도 1건에 74만원, 2003년도 2건에 7,374만원 그리고 2004년 7월말 현재 4건에 2,169만원으로 예산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임.</li> <li>○ 신고자에 대한 포상, 인사상 우대 제도 신설, 신고자보호를 위한 배려 및 보상금지급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것.</li> </ul>	제도개선	부패방지위원회
기타 부당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순회부패방지 활동 사업의 문제</li> <li>· 일반회계</li> <li>· 기관운영(1101)</li> <li>○ 지방순회부패방지활동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지역단위 시민단체에 상설신고센터가 개설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업의 존치여부 또는 세부사업 개편 등에 대하여 검토할 것.</li> </ul>	제도개선	부패방지위원회
예·결산 제도의 운용상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용역비의 문제</li> <li>· 일반회계</li> <li>· 기본사업비등(1102)</li> <li>○ 발주시기 지연(17건중 14건이 3/4분기이후 발주)으로 용역 결과물의 하반기 집중과 불필요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li> </ul>	주 의	부패방지위원회



과목	세출예산액	전년이월액	예외비/가용액	의용종감액	의용감축액	수입대제정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응액	사업계요1	사업계요2
201목 광선운영비	0	0	13,987,000	0	0	0	13,987,000	13,214,480	0	0	772,520	
202목 허비	0	0	1,000,000	0	0	0	1,000,000	639,900	0	0	360,100	
204목 업무추진비	0	0	6,080,000	0	0	0	6,080,000	1,712,740	0	0	4,367,260	
204목 서설비	0	0	14,500,000	0	0	0	14,500,000	12,895,000	0	0	1,605,000	
207목 자산취득비	0	0	454,800,000	0	0	0	454,800,000	321,522,150	120,000,000	0	12,977,850	
국가정보위원회 소관합계	0	0	19,203,238,000	0	0	0	19,203,238,000	14,776,142,450	986,210,000	3,440,895,550		

[일반회계/세출결산보고서/국가정보원]

과목	세출예산액	전년이월액	예외비/가용액	의용종감액	의용감축액	수입대제정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응액	사업계요1	사업계요2
130장 일반행정	267,887,027,000	2,183,000,000	0	0	0	0	269,870,027,000	264,146,653,000	5,080,000,000	643,374,000		
131관 일반행정	267,887,027,000	2,183,000,000	0	0	0	0	269,870,027,000	264,146,653,000	5,080,000,000	643,374,000		
1100항 정보비	267,887,027,000	2,183,000,000	0	0	0	0	269,870,027,000	264,146,653,000	5,080,000,000	643,374,000		
1111세항 정보활동	267,887,027,000	2,183,000,000	0	0	0	0	269,870,027,000	264,146,653,000	5,080,000,000	643,374,000		
203목 특수활동비	267,887,027,000	2,183,000,000	0	0	0	0	269,870,027,000	264,146,653,000	5,080,000,000	643,374,000		
국가정보원 소관합계	267,887,027,000	2,183,000,000	0	0	0	0	269,870,027,000	264,146,653,000	5,080,000,000	643,374,000		

2002년도 국가인권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일반회계)

2003.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한 길

<目 次>

I. 개 황	1
II. 일반회계	1
1. 세 입	1
2. 세 출	2
3. 예비비	3
4.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상황	3
III. 검토의견	4
1. 과태료 미수납에 관한 사항	4
2. 인권영화제작관련 전용에 관한 사항	6
3. 도서구입사업 등의 이월에 관한 사항	7
4. 국제회의 관련예산에 관한 사항	8
5. 간단한 법률검토의 용역화에 관한 사항	9
IV. 결산시정요구사항	11
※ 참고자료	12
1. 세출예산 전용조서	12
2. 세출예산 이월조서	13
3. 국제회의관련 사업변경내역	15

2003년 8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I. 개 황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용하고 있는 회계는 일반회계뿐이며, 이번 결산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본격 출범(사무처 발족: 2002. 4. 1)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회계 결산임.

## II. 일반회계

### 1. 세 입

(단위 : 천원)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	11,000	-	11,000	

조사불응 과태료로 1,100만원 (주한미군: 1,000만원, 청송 제2교도소 보안과장: 100만원) 이 징수 결정되었으나, 전액 미수납됨.

### 2. 세 출

(단위 : 천원)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전용증감액	이용및이체액				
19,203,000	-	-	-	-	19,203,000	14,776,000	986,000	3,441,000

2002년도 세출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192억 300만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7%인 147억 7,6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7.9%인 34억 4,100만원임.

(1) 지출액 147억 7,600만원에 대한 세항별 내역을 보면,

- 기관운영에 68억 6,000만원을 지출하여 전체 지출액대비 46.5%를 차지하고 있고,
- 사업비로 43억 3,200만원을 지출하여 전체 지출액 대비 29.3%를, 그 밖에 인건비로 35억 8,400만원을 지출하여 전체 지출액 대비 24.2%를 차지하고 있음.

(2) 이월액은 9억 8,600만원으로서, 이는 인권정보종합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개발용역 등의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것임.

(3) 불용액은 34억 4,100만원으로서, 이는 인권위 사무처 발족이

후 직원 충원의 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및 사업 미착수에 주로 기인함.

### 3. 예비비

2002년도 인권위 예산은 국회의 예산 확정후 인권위가 출범함에 따라 일반회계 예비비를 통하여 전액 편성됨.

### 4.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지 적 사 항	조 치 상 황
○ 전문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예산편성의 부적정.	○ 감사원의 조치요구대로 전문계약직인건비 예산을 행정자치부와 협의 (2003년 7월) 하여 전문계약직 8명을 두기로 함.

### III. 검토의견

2002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192억 3백만원인바, 동 예산액의 집행내역을 보면,

- 집행액 147억 7,600 만원,
- 이월액 9억 8,600 만원,
- 불용액 34억 4,100 만원으로서  
77%의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과태료 미수납에 관한 사항

2002년도에 발생한 세입의 내역을 살펴보면, 조사불응 과태료로 주한미군에 대하여 1,000만원을, 청송 제2교도소 보안과장에 대하여 1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과태료의 현재 수납상황을 살펴보면, 수용자에 대한 계구사용 등 가혹행위 조사를 위한 자료요구 불응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청송 제2교도소 보안과장의 경우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제기, 2003. 9. 2. 현재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50만원으로 과태료 감액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한편, 현재까지 전액 미수납 상태인 주한미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문제에 대한 인권위 설명에 따르면, 취재기자에 대한 주한미군의 불법체포·감금 등에 따른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라는 실체적 필요성이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이 존재하였다는 점 등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규정상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동산은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과태료 처분의 강제집행이 어려워 그 부과와 실효성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1월 연두교서에서 행한 부시 美대통령의 '악의 축'(axis of evil) 발언이후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지역의 긴장관계가 고조됨으로써 한미간 긴밀한 군사공조구축 등 한반도 안정을 위한 조치들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진 시점임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인권위의 과태료 부과는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군사·외교관계의 특수성 등을 면밀히 형량하여야 할 국가기관으로서 균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2. 인권영화제작관련 전용에 관한 사항

인권영화의 제작을 위한 예산의 집행과정을 살펴보면, 인권영화의 제작을 위한 소요경비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하여 인권정책기본사업비 등으로부터 예산액이 전용, 충당된 후 영화제작내용의 보완 등을 이유로 일부 예산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러한 예산집행과정에서 인권위는 전용 결정이 있는 후 관계기관에의 통보 및 결산보고서에의 반영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인권영화제작관련 예산전용>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용액	지출액	이월액
인권영화 제작	170	187	318	39

이는 중앙관서의 장이 전용을 한 경우 전용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등에게 송부하고 당해 사항을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기재토록 하고 있는 예산회계법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부

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 인권위는 예산을 전용할 경우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3. 도서구입사업 등의 이월액에 관한 사항

사고이월이 된 사업들 가운데 도서구입사업, 홍보물 제작사업의 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이들 사업의 착수가 11월과 12월에 각각 이루어짐으로써 사고이월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사업들로 보여집니다.

<도서구입 및 홍보물제작 사업>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불용액
도서 구입	455	322	120	13
홍보물 제작	25	-	25	-

비록 이번 결산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본격 출범(사무처 발족: 2002. 4. 1)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회계 결산으로서 인권위의 기관 형성 등의 측면에서 사고이월이 출범 첫해에 발생한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정부회계연도의 취지에 맞게 당

해연도의 사업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종료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국제회의관련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2002년도 국제회의 관련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액 1억 1,100만 원중 7,8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예산상 당초 계획되었던 대부분의 국제회의를 인권위사무처 출범전의 국제회의 (2002. 3월의 유엔인권위원회 등) 또는 참가지위의 결여 (2002. 7월 유엔인권소위원회) 등의 사유로 참가하지 못하고 그 대신 여러 NGO 회의 등에 인권위가 참가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3. 국제회의관련 사업변경내역 참조.>

이는 인권위 사무처 출범시기를 감안하지 않고서 무리하게 국제회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과 유엔의 특정회의에 인권위가 독립된 참가지위를 갖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 등이 지적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인권위는 각종 국제회의에 참가하는데 따르는 실익, 참가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 간단한 법률검토에 대한 용역화의 문제

용역비 가운데 “아동청소년관련 법령검토” 사업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청소년보호법 등 4가지 사안과 관련하여 1,200만원의 예산을 수의계약의 형태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불 용	비 고
○ 아동청소년관련법령검토	12	12	-	
- 가정폭력방지법	3	3	-	
- 청소년보호법	3	3	-	
- 노동관련법	3	3	-	
- 아동복지법	3	3	-	

인권위 조직내에 법제개선담당관실, 인권연구담당관실 등 자체 법률검토조직이 존재하고, 전문계약직 등을 통하여 변호사 자격을 갖춘 실무 인력(총 5인: 5급 3인, 국장급 2인)을 갖추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는 외부용역을 발주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아니하는 간단한 법률검토의 경우에는 인권위 자체조직과 인력을 활용하

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IV. 결산시정요구사항

결산소관	제 목	관련 내용 요 지	시 정 요 구 사 항
국가인권위원회 (일반회계)	국제회의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 예산상 당초 계획되었던 상당 부분의 국제회의를 인권위사무처 출범전의 국제회의 또는 참가지위의 결여 등의 사유로 참가하지 못하고 그 대신 여러 NGO 회의 등에 참가하였음.	- 인권위가 독립된 참가 지위를 갖는지 여부, 국제회의의 참가에 따르는 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제회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향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간단한 법률 검토에 대한 용역화 문제	- 인권위 조직내에 법제개선담당관실, 인권연구담당관실 등 자체 법률검토조직이 존재하고, 전문계약직 등을 통하여 변호사 자격을 갖춘 실무 인력(5인)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간단한 법률검토 사안을 외부 용역화 하였음.	- 외부용역을 발주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아니하는 간단한 법률검토의 경우에는 인권위 자체조직과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참고자료 1>

세출예산 불용조사

(단위 : 천원)

과 목(세항별)	불 용 액	불용의 구체적 사유
130 장 일반행정	3,440,886	
131 관 일반행정	3,440,886	
1100 항 인권행정	3,440,886	
1101 세항 기관운영	1,723,802	'02. 4. 1. 사무처 발족 후 인원 충원 지연
1102 기관운영 기본사업비	524,299	인원 충원 지연으로 사업 축소 및 미착수, 집행잔액
1111 인권정책	30,893	인원 충원 지연으로 사업 축소 및 미착수, 집행잔액
1112 인권정책 기본사업비	157,738	인원 충원 지연으로 사업 축소 및 미착수, 집행잔액
1121 행정운영	294,984	인원 충원 지연으로 사업 축소 및 미착수, 집행잔액
1122 행정운영 기본사업비	53,803	인원 충원 지연으로 사업 축소 및 미착수, 집행잔액
1131 인권침해조사 기본사업비	208,102	인원 충원 지연으로 사업 축소 및 미착수, 집행잔액
1141 차별조사 기본사업비	83,932	인원 충원 지연으로 사업 축소 및 미착수, 집행잔액
1151 대외협력	242,326	인원 충원 지연으로 사업 축소 및 미착수, 집행잔액
1152 대외협력 기본사업비	100,924	인원 충원 지연으로 사업 축소 및 미착수, 집행잔액
1171 인권자료 기본사업비	20,083	인원 충원 지연으로 사업 축소 및 미착수, 집행잔액

<참고자료 2>

세출예산 이월조서

(단위 : 천원)

과 목	금 액	이 월 사 유	사 업 및 내 역
130 장 일반행정	986,210		
131 관 일반행정	986,210		
1100 향 인권행정	986,210		
1111 세항 인권정책	105,100		
206 목 용역비	105,100		
	30,000	○ 관계기관과 협의지연	○ 구금시설의 의료실태조사 및 의료권 보장 연구용역
	12,500	○ 관계기관과 협의지연	○ 구금시설내 진정권 보장 실태조사 연구용역
	10,000	○ 관계기관과 협의지연	○ 범죄수사상 피의자 인권침해 연구용역
	21,000	○ 관계기관과 협의지연	○ 유치장 시설환경 인권실태조사 용역
	10,000	○ 관계기관과 협의지연	○ 보안관찰 대상자의 인권침해조사 연구용역
	21,600	○ 사업계획 변경 및 보완	○ 인권영화제작(차별관련)
1112 세항 인권정책 기본사업비	27,500		
206 목 용역비	27,500		
	27,500	○ 사업계획 변경 및 보완	○ 인권영화제작(차별관련)

(단위 : 천원)

과 목	금 액	이 월 사 유	사 업 및 내 역
1121 세항 행정운영	680,924		
206 목 용역비	680,924		
	639,167	○ 사업기간 부족	○ 인권종합정보시스템 개발 용역
	41,757	○ 사업기간 부족	○ 인권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정보 시스템 감리용역
1141 세항 차별조사 기본사업비	25,286		
201 목 관서운영비	25,286		
	25,286	○ 사업착수 지연	○ 차별행위 홍보물(포스터, 브로셔) 제작
1152 세항 대의협력 기본사업비	27,400		
201 목 관서운영비	16,000		
	16,000	○ 사업착수 지연	○ 인권실무핸드북 제작
206 목 용역비	11,400		
	5,900	○ 사업계획변경 및 보완	○ 인권영화 제작
	2,750	○ 선행사업(영화제작)지연	○ 인권영화 메이킹 제작
	2,750	○ 선행사업(영화제작)지연	○ 인권영화스틸 제작
1171 세항 인권자료 기본사업비	120,000		
407 목 자산취득비	120,000		
	120,000	○ 사업기간 부족	○ 외국도서 구입

<참고자료 3>

국제회의관련 사업변경 내역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사업변경내용	변경사유
계	111	78		
- 1102-151-202-02 · 외국 국가인권위원회 상담 현황 조사	6	-	-	
- 1112-151-202-02 · 외국인권제도 연구 등 현지 출장	6	3	-	
- 1151-151-202-02 · APF 관련 · 유엔인권위원회 관련	90	67	· 네덜란드 교정회의 · 일본변협 심포지움 · 일본인권포럼 21 · 일본인권의 날 기념 강연 · 아시아시민사회포럼 · 호주·뉴질랜드 국 가 인권기구 · 캐나다국가인권기구	제74차 유엔인권이사회 등은 사무처출범의 지연 참가지위 확보 지원, 국 가보고서 심의지연 등으 로 참가하지 못하였으나, 국제사회에서 역할이 날 로 증대하고 있는 NGO 주관 국제회의 출장으로 변경
- 1152-151-202-02 · 인권교육홍보 관련 현지 출장	9	8	-	

2002회계연도  
법제사법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보고서

법무부소관  
법제처소관  
감사원소관  
헌법재판소소관  
대법원소관  
국가인권위원회소관  
부패방지위원회소관

2003. 9.

법제사법위원회

## I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03년 8월 29일

2. 회부일자 : 2003년 8월 30일

3. 상정일자 : 제 243회국회(정기회)

가. 법무부소관 세입세출결산

○ 제2차 위원회(2003. 9. 16) 상정·대체토론·의결

나. 법제처소관 세입세출결산

○ 제3차 위원회(2003. 9. 17) 상정·대체토론·의결

다. 감사원소관 세입세출결산

○ 제3차위원회(2003. 9. 17) 상정·대체토론·의결

라. 헌법재판소소관 세입세출결산

○ 제2차 위원회(2003. 9. 16) 상정·대체토론·의결

마. 대법원소관 세입세출결산

○ 제2차 위원회(2003. 9. 16) 상정·대체토론·의결

바. 국가인권위원회 세입세출결산

○ 제3차위원회(2003. 9. 17) 상정·대체토론·의결

사. 부패방지위원회 세입세출결산

○ 제3차위원회(2003. 9. 17) 상정·대체토론·의결

## III. 결산개요

### 1. 법무부소관

○ 일반회계

세 입

예 산 액	1조 935억2,300만원
징수결정액	1조3,852억4,200만원
수 납 액	1조3,848억3,600만원
미 수 납 액	4억 600만원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비율은 99.97%이며, 미수납액비율은 0.03%에 해당됨.

6. 국가인권위원회소관

○ 일반회계

세 입

예 산 액	-
징수결정액	1,100만원
수 납 액	-
미수납액	1,100만원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비율은 0%이고, 미수납액비율은 100%임.

세 출

예 산 액	192억 300만원
예 산 현 액	192억 300만원
지 출 액	147억7,600만원
다음연도이월액	9억8,600만원
불 용 액	34억4,100만원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비율은 77%이고 다음연도이월액비율이 5.1%이며 불용액비율은 17.9%에 해당됨.

7. 부패방지위원회소관

○ 일반회계

세 입

없음.

세 출

예 산 액	151억7,205만2,000원
예 산 현 액	151억7,205만2,000원
지 출 액	123억 6,884만원
다음연도이월액	12억3,450만원
불 용 액	15억7,176만5,000원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비율은 81.5%이고 다음연도이월액비율이 8.1%이며 불용액비율은 10.4%에 해당됨.

## 6. 국가인권위원회 세입세출결산

(전문위원 : 이 한 길)

2002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192억 3백만원인 바, 동 예산액의 집행내역을 보면,

- 집행액 147억 7,600 만원,
- 이월액 9억 8,600 만원,
- 불용액 34억 4,100 만원으로서  
77%의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다음과 같음.

### 가. 과태료 미수납에 관한 사항

2002년도에 발생한 세입의 내역을 살펴보면, 조사불응 과태료로 주한미군에 대하여 1,000만원을, 청송 제2교도소 보안과장에 대하여 1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음.

이러한 과태료의 현재 수납상황을 살펴보면, 수용자에 대한 계

구사용 등 가혹행위 조사를 위한 자료요구 불응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청송 제2교도소 보안과장의 경우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제기, 2003. 9. 2. 현재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50만원으로 과태료 감액이 결정된 상태임.

한편, 현재까지 전액 미수납 상태인 주한미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문제에 대한 인권위 설명에 따르면, 취재기자에 대한 주한미군의 불법체포·감금 등에 따른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라는 실제적 필요성이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이 존재하였다는 점 등이 주장되고 있음.

그러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규정상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동산은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과태료 처분의 강제집행이 어려워 그 부과의 실효성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1월 연두교서에서 행한 부시 美대통령의 '악의 축'(axis of evil) 발언이후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지역의 긴장관계가 고조됨으로써 한미간 긴밀한 군사공조구축 등 한반도 안정을 위한 조치들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진 시점임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인권위의 과태료 부과는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군사·외교



관계의 특수성 등을 면밀히 형량하여야 할 국가기관으로서 균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따를 수 있음.

나. 인권영화제작관련 전용에 관한 사항

인권영화의 제작을 위한 예산의 집행과정을 살펴보면, 인권영화의 제작을 위한 소요경비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하여 인권정책기본사업비 등으로부터 예산액이 전용, 충당된 후 영화제작내용의 보완 등을 이유로 일부 예산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러한 예산집행과정에서 인권위는 전용 결정이 있는 후 관계기관에의 통보 및 결산보고서에의 반영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인권영화제작관련 예산전용>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용액	지출액	이월액
인권영화 제작	170	187	318	39

이는 중앙관서의 장이 전용을 한 경우 전용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등에게 송부하고 당해 사항을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예산회계법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부합하

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 인권위는 예산을 전용할 경우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다. 도서구입사업 등의 이월에 관한 사항

사고이월이 된 사업들 가운데 도서구입사업, 홍보물 제작사업의 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이들 사업의 착수가 11월과 12월에 각각 이루어짐으로써 사고이월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사업들로 보여짐.

<도서구입 및 홍보물제작 사업>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불용액
도서 구입	455	322	120	13
홍보물 제작	25	-	25	-

비록 이번 결산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본격 출범(사무처 발족: 2002. 4. 1)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회계 결산으로서 인권위의 기관형성 등의 측면에서 사고이월이 출범 첫해에 발생한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정부회계연도의 취지에 맞게 당해연

도의 사업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종료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라. 국제회의관련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2002년도 국제회의 관련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액 1억 1,100만원 중 7,8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예산상 당초 계획되었던 대부분의 국제회의를 인권위사무처 출범전의 국제회의 (2002. 3월의 유엔인권위원회 등) 또는 참가지위의 결여 (2002. 7월 유엔인권소위원회) 등의 사유로 참가하지 못하고 그 대신 여러 NGO 회의 등에 인권위가 참가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음. <참고자료 3. 국제회의관련 사업변경내역 참조.>

이는 인권위 사무처 출범시기를 감안하지 않고서 무리하게 국제회의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과 유엔의 특정회의에 인권위가 독립된 참가지위를 갖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 등이 지적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인권위는 각종 국제회의에 참가하는데 따르는 실익, 참가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마. 간단한 법률검토에 대한 용역화의 문제

용역비 가운데 “아동청소년관련 법령검토” 사업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청소년보호법 등 4가지 사안과 관련하여 1,200만원의 예산을 수의계약의 형태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불 용	비 고
○ 아동청소년관련법령검토	12	12	-	
- 가정폭력방지법	3	3	-	
- 청소년보호법	3	3	-	
- 노동관련법	3	3	-	
- 아동복지법	3	3	-	

인권위 조직내에 법제개선담당관실, 인권연구담당관실 등 자체 법률검토조직이 존재하고, 전문계약직 등을 통하여 변호사 자격을 갖춘 실무 인력(총 5인: 5급 3인, 국장급 2인)을 갖추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는 외부용역을 발주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아니하

는 간단한 법률검토의 경우에는 인권의 자체조직과 인력을 활용하  
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7. 부패방지위원회 세입세출결산

(전문위원 : 이 한 길)

부패방지위원회는 2001년 7월 24일 공포된 부패방지법(법률 제6494  
호)에 따라 2002년 1월 25일에 출범하였음. 출범시기가 2002년이었기  
때문에, 2002년에는 본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고, 따라서 예비비로 예  
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부패방지위원회 세출예산은 151억 7,205만 2천원인데, 이 중 81.5%  
에 해당하는 123억 6,883만 7천원이 지출되었음.

전용액은 7,700만원인데,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용역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운영기본사업비 중 용역비목에서 7,700  
만원을 전용하였음.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8.1%인 12억 3,145만원이었는데, 이는  
계약체결 및 설계지연과 사업내용 추가에 따른 것임.

그리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0.4%인 15억 7,176만, 5,000원이었는데,

6. 국가인권위원회소관

- 청송 제2교도소 보안과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교도행정의 책임자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자료를 요구하고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견해
- 주한미군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양심적 병역거부관련 영화제작 등 안보위험을 가중시키는 활동보다는 경찰, 검찰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조사 등 인권위 본래 업무에 보다 충실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 용역비 집행과 관련, 북한 인권에 대한 연구 또는 실태조사 실적.
- 용역비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점에 대한 견해 및 사업부서별 · 조직규모별 용역비 사용에 대한 필요도 조사가 예산의 편성과 심의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견해.
- 인터넷 시대에 도서구입의 필요성이 약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도서구입비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 도서대출 및 열람 등 활용현황.

- 버림받고 학대받는 노인과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실적 및 계속사업으로서의 추진 방안
- 변호사 등 실무직원과 법률검토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법률검토 사항을 용역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7. 부패방지위원회소관

- 신고자보상금 지급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은 제도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 용역비가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닌가
- 내부고발건에 대한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 부패방지위원회가 설립된 후에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개선되었는지 여부
- 부방위의 역할이 용역보다는 실제적인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용역단가에 차이가 나는 이유

## VI. 심사결과

### 1. 법무부소관

원안대로 접수하기로 의결

### 2. 법제처소관

원안대로 접수하기로 의결

### 3. 감사원소관

원안대로 접수하기로 의결

### 4. 헌법재판소소관

원안대로 접수하기로 의결

### 5. 대법원소관

원안대로 접수하기로 의결

### 6. 국가인권위원회소관

원안대로 접수하기로 의결

### 7. 부패방지위원회소관

원안대로 접수하기로 의결

6.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소관	제 목	관련내용요지	시정요구사항
국가인권위원회 (일반회계)	국제회의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 예산상 당초 계획되었던 상당 부분의 국제회의를 인권위사무처 출범전의 국제회의 또는 참가지위의 결여 등의 사유로 참가하지 못하고 그 대신 여러 NGO 회의 등에 참가하였음.	- 인권위가 독립된 참가지위를 갖는지 여부, 국제회의의 참가에 따르는 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제회의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향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간단한 법률검토에 대한 용역화 문제	- 인권위 조직내에 법제개선담당관실, 인권연구담당관실 등 자체 법률검토조직이 존재하고, 전문계약직 등을 통하여 변호사 자격을 갖춘 실무 인력(5인)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간단한 법률검토사안을 외부 용역화 하였음.	- 외부용역을 발주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아니하는 간단한 법률검토의 경우에는 인권위 자체조직과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7. 부패방지위원회 소관

결산소관	제 목	관련내용요지	시정요구사항
부패방지위원회 (일반회계)	용역비에 대한 시정요구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이월액이 많으며, 용역단가 산정의 일반적 기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용역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 것.
	신고자보상제도 운영사업에 대한 시정요구	○신고자보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음.	○제도개선, 홍보 등을 통하여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대책을 세우거나, 동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임.

2002회계연도  
법제사법위원회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견  
예비심사보고서

법무부소관  
감사원소관  
헌법재판소소관  
대법원소관  
국가인권위원회소관  
부패방지위원회소관

2003. 9.

법제사법위원회

## I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03년 8월 29일

2. 회부일자 : 2003년 8월 30일

3. 상정일자 : 제 243회국회(정기회)

가. 법무부소관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 제2차 위원회(2003. 9. 16) 상정·대체토론·의결

나. 감사원소관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 제3차위원회(2003. 9. 17) 상정·대체토론·의결

헌법재판소소관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 제2차 위원회(2003. 9. 16) 상정·대체토론·의결

라. 대법원소관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 제2차 위원회(2003. 9. 16) 상정·대체토론·의결

마. 국가인권위원회 예비비지출승인 건

- 제3차위원회(2003. 9. 17) 상정·대체토론·의결

바. 부패방지위원회 예비비지출승인 건

- 제3차위원회(2003. 9. 17) 상정·대체토론·의결

## III. 예비비사용 개요

### 1. 법무부소관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용 내 역	금 액
계	23,387
○ 국가배상금	1,216
○ 불법체류외국인자진신고관련경비	516
○ 형사보상금 및 범죄피해자구조금	2,198
○ 공적자금비리사법 단속경비	1,513
○ 제3회 지방선거사법 단속경비	1,181
○ 제16대 대통령선거사법 단속경비	1,326
○ 공공요금	6,664
○ 특별검사제 운영경비	1,091
○ 반부패세계회의 준비사무국 운영	1,495
○ 봉급 부족액	6,187



5. 국가인권위원회소관

○ 일반회계

세 입

예 산 액	-
징수결정액	1,100만원
수 납 액	-
미수납액	1,100만원

세 출

예 산 액	192억 300만원
예 산 현 액	192억 300만원
지 출 액	147억7,600만원
다음연도이월액	9억8,600만원
불 용 액	34억4,100만원

6. 부패방지위원회소관

○ 일반회계

세 출

예 산 액	151억7,205만2,000원
예 산 현 액	151억7,205만2,000원
지 출 액	123억 6,884만원
다음연도이월액	12억3,45만원
불 용 액	15억7,176만5,000원

### 5. 국가인권위원회 세입세출결산

(전문위원 : 이 한 길)

2002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192억 3백만원인 바, 동 예산액의 집행내역을 보면,

- 집행액 147억 7,600 만원,
- 이월액 9억 8,600 만원,
- 불용액 34억 4,100 만원으로서 77%의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다음과 같음.

#### 가. 과태료 미수납에 관한 사항

2002년도에 발생한 세입의 내역을 살펴보면, 조사불용 과태료로 주한미군에 대하여 1,000만원을, 청송 제2교도소 보안과장에 대하여 1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음.

이러한 과태료의 현재 수납상황을 살펴보면, 수용자에 대한 계

구사용 등 가혹행위 조사를 위한 자료요구 불응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청송 제2교도소 보안과장의 경우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제기, 2003. 9. 2. 현재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50만원으로 과태료 감액이 결정된 상태임.

한편, 현재까지 전액 미수납 상태인 주한미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문제에 대한 인권위 설명에 따르면, 취재기자에 대한 주한미군의 불법체포·감금 등에 따른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라는 실제적 필요성이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이 존재하였다는 점 등이 주장되고 있음.

그러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규정상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동산은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과태료 처분의 강제집행이 어려워 그 부과의 실효성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1월 연두교서에서 행한 부시 美대통령의 '악의 축'(axis of evil) 발언이후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지역의 긴장관계가 고조됨으로써 한미간 긴밀한 군사공조구축 등 한반도 안정을 위한 조치들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진 시점임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인권위의 과태료 부과는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군사·외교

관계의 특수성 등을 면밀히 형량하여야 할 국가기관으로서 균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따를 수 있음.

나. 인권영화제작관련 전용에 관한 사항

인권영화의 제작을 위한 예산의 집행과정을 살펴보면, 인권영화의 제작을 위한 소요경비의 부족분을 매우기 위하여 인권정책기본사업비 등으로부터 예산액이 전용, 총당된 후 영화제작내용의 보완 등을 이유로 일부 예산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러한 예산집행과정에서 인권위는 전용 결정이 있는 후 관계기관에의 통보 및 결산보고서에의 반영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인권영화제작관련 예산전용>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용액	지출액	이월액
인권영화 제작	170	187	318	39

이는 중앙관서의 장이 전용을 한 경우 전용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등에게 송부하고 당해 사항을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기재도록 하고 있는 예산회계법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부합하

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 인권위는 예산을 전용할 경우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도서구입사업 등의 이월에 관한 사항

사고이월이 된 사업들 가운데 도서구입사업, 홍보물 제작사업의 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이들 사업의 착수가 11월과 12월에 각각 이루어짐으로써 사고이월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사업들로 보여짐.

<도서구입 및 홍보물제작 사업>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불용액
도서 구입	455	322	120	13
홍보물 제작	25	-	25	-

비록 이번 결산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본격 출범(사무처 발족: 2002. 4. 1)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회계 결산으로서 인권위의 기관형성 등의 측면에서 사고이월이 출범 첫해에 발생한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정부회계연도의 취지에 맞게 당해연

도의 사업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종료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라. 국제회의관련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2002년도 국제회의의 관련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액 1억 1,100만원 중 7,8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예산상 당초 계획되었던 대부분의 국제회의를 인권위사무처 출범전의 국제회의 (2002. 3월의 유엔인권위원회 등) 또는 참가지위의 결여 (2002. 7월 유엔인권소위원회) 등의 사유로 참가하지 못하고 그 대신 여러 NGO 회의 등에 인권위가 참가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음. <참고자료 3. 국제회의관련 사업변경내역 참조.>

이는 인권위 사무처 출범시기를 감안하지 않고서 무리하게 국제회의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과 유엔의 특정회의에 인권위가 독립된 참가지위를 갖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 등이 지적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인권위는 각종 국제회의에 참가하는데 따르는 실익, 참가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마. 간단한 법률검토에 대한 용역화의 문제

용역비 가운데 “아동청소년관련 법령검토” 사업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청소년보호법 등 4가지 사안과 관련하여 1,200만원의 예산을 수의계약의 형태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불 용	비 고
○ 아동청소년관련법령검토	12	12	-	
- 가정폭력방지법	3	3	-	
- 청소년보호법	3	3	-	
- 노동관련법	3	3	-	
- 아동복지법	3	3	-	

인권위 조직내에 법제개선담당관실, 인권연구담당관실 등 자체 법률검토조직이 존재하고, 전문계약직 등을 통하여 변호사 자격을 갖춘 실무 인력(총 5인: 5급 3인, 국장급 2인)을 갖추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는 외부용역을 발주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아니하

는 간단한 법률검토의 경우에는 인권위 자체조직과 인력을 활용하  
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6. 부패방지위원회 세입세출결산

(전문위원 : 이 한 길)

부패방지위원회는 2001년 7월 24일 공포된 부패방지법(법률 제6494  
호)에 따라 2002년 1월 25일에 출범하였음. 출범시기가 2002년이었기  
때문에, 2002년에는 본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고, 따라서 예비비로 예  
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부패방지위원회 세출예산은 151억 7,205만 2천원인데, 이 중 81.5%  
에 해당하는 123억 6,883만 7천원이 지출되었음.

전용액은 7,700만원인데,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용역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운영기본사업비 중 용역비목에서 7,700  
만원을 전용하였음.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8.1%인 12억 3,145만원이었는데, 이는  
계약체결 및 설계지연과 사업내용 추가에 따른 것임.

그리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0.4%인 15억 7,176만 5,000원이었는데,  
이는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계획변경 및

### 5. 국가인권위원회소관

- 청송 제2교도소 보안과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교도행정의 책임자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자료를 요구하고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견해
- 주한미군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양심적 병역거부관련 영화제작 등 안보위험을 가중시키는 활동보다는 경찰, 검찰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조사 등 인권위 본래 업무에 보다 충실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 용역비 집행과 관련, 북한 인권에 대한 연구 또는 실태조사 실적.
- 용역비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점에 대한 견해 및 사업부서별·조직규모별 용역비 사용에 대한 필요도 조사가 예산의 편성과 심의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견해.
- 인터넷 시대에 도서구입의 필요성이 약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도서구입비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 도서대출 및 열람 등 활용현황.

○ 버림받고 학대받는 노인과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실적 및 계속사업으로서의 추진 방안

○ 변호사 등 실무직원과 법률검토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법률검토 사항을 용역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 6. 부패방지위원회소관

○ 신고자보상금 지급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은 제도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 용역비가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닌가

○ 내부고발전에 대한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 부패방지위원회가 설립된 후에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개선되었는지 여부

○ 부방위의 역할이 용역보다는 실제적인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용역단가에 차이가 나는 이유

- 내부 고발을 한 공무원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행위가 부패인지 여부와 내부고발이라고 볼 수 있는 김도훈 전 감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지
- 정치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의 추진실적과 성과는
- 부패방지 통합 시스템 구축사업의 추진실적 및 그 시스템의 활용 대책은
- 건물 임대차 계약을 함에 있어서 전세권설정을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지 않은지
- 부패방지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다양한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VI. 심사결과

### 1. 법무부소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

### 2. 감사원소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

### 3. 헌법재판소소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

### 4. 대법원소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

### 5. 국가인권위원회소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

5.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소관	제 목	관 련 내 용 요 지	시 정 요 구 사 항
국가인권위원회 (일반회계)	국제회의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 예산상 당초 계획되었던 상당 부분의 국제회의를 인권위사무처 출범전의 국제회의 또는 참가지위의 결여 등의 사유로 참가하지 못하고 그 대신 여러 NGO 회의 등에 참가하였음.	- 인권위가 독립된 참가 지위를 갖는지 여부, 국제회의의 참가에 따르는 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제회의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향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간단한 법률 검토에 대한 용역화 문제	- 인권위 조직내에 법제개선담당관실, 인권연구담당관실 등 자체 법률검토조직이 존재하고, 전문계약직 등을 통하여 변호사 자격을 갖춘 실무 인력(5인)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간단한 법률검토 사안을 외부 용역화 하였음.	- 외부용역을 발주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아니하는 간단한 법률검토의 경우에는 인권위 자체조직과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6. 부패방지위원회 소관

결산소관	제 목	관 련 내 용 요 지	시 정 요 구 사 항
부패방지위원회 (일반회계)	용역비에 대한 시정요구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이월액이 많으며, 용역단가 산정의 일반적 기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용역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 것.
	신고자보상제도에 운영사업에 대한 시정요구	○신고자보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음.	○ 제도개선, 홍보 등을 통하여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대책을 세우거나, 동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임.



2002年度 決算 및 豫備費支出承認의 件

# 檢 討 報 告 書

2003. 10.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專 門 委 員

## 9. 국가인권위원회

### <세출>

#### (1) 전문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예산편성 부적정(1101)

-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문제 등을 연구할 전문 인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계약직 공무원 15명의 인건비 5억 8,000만원을 예비비에서 배정받았으나, 관련기관(행정자치부, 전문계약직 공무원 축소 방침)과의 협의가 미진하여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관련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 하고 있음.
- 정부의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소속장관이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필요성,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 및 채용조건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기관(행정자치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동 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소정의 협의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비비를 요구하고, 예산기관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함이 없이 예비비를 배정하는 등 안이하게 예비비를 배정하고 집행하였는 바, 이는 성실하지 못한 예산집행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심 사 보 고 서

2003. 11.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03년 8월 29일
2. 회부일자 : 2003년 10월 22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3회국회(정기회)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 10. 27)

- 상정
- 제안설명(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 결산검사보고(감사원장직무대리)
- 감사원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집행현황보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 검토보고(전문위원)
- 종합정책질의 및 답변(경제부처)

## 9. 국가인권위원회

### <세출>

#### (1) 전문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예산편성 부적정(1101)

-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문제 등을 연구할 전문 인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계약직 공무원 15명의 인건비 5억 8,000만원을 예비비에서 배정받았으나, 관련기관(행정자치부, 전문계약직 공무원 축소 방침)과의 협의가 미진하여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관련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 하고 있음.
  
- 정부의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소속장관이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필요성,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 및 채용조건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기관(행정자치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동 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소정의 협의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비비를 요구하고, 예산기관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함이 없이 예비비를 배정하는 등 안이하게 예비비를 배정하고 집행하였는 바, 이는 성실하지 못한 예산집행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